

전주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단120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은 원고에게 17,124,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9.부터 2023.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D은 활어운반선을 소유할 회사를 설립하고 (주)E 소유의 활어운반선을 매수하여 수리한 후에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은 2016. 4. 15. 유한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16. 4. 20. 위 E으로부터 활어운반선 G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 피고 B, D은 2016. 5. 23. 책임이행각서 및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활어운반선의 명의는 이 사건 회사로 하되, 실소유주와 모든 권리는 원고, 피고 B, D으로 하고, 수익금은 위 3인의 수익금으로 하되, 이 사건 회사를 H으로 상호 변경할 시점에서 위 3인에게 지분은 1/3로 정하며, G 수리비와 운영자금은 피고 B의 투자금으로 하기로 하고 투자금은 G 수리가 끝나고 출항 전까지 준비해야 되고, 그 외 자금이나 운영자금은 차용금이나 선수금으로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일신상의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이나 지분을 넘길 시에는 위 3인이 각자가 지정한 사람이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고, 지분 변경시에는 위 3인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 B의 지정인으로 선정자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 B이 운반선 매매대금 등을 투자하여 활어운반선을 매수한 다음 이를 수리하였는데 수리비가 예상외로 많이 소요되어 수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활어운반선을 팔아서 사업을 정리하기로 3인이 합의하여 2016. 6.경 활어운반선을 7억 6,000만 원에 I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방식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I에게 7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라. 한편 그 당시까지 들어간 비용은 선박매수비용 1억 6,000만 원, 고물상처리비 2,000만 원, 수리비 2억 2,100만 원, 등기비용 900만 원, 용역대금 3,000만 원(2016. 6. 20. J에게 송금한 돈)이 있다.

마. 그 외에 피고 B은 원고의 원룸임대료로 임대인에게 합계 438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경비로 2016. 3. 6.부터 2016. 6. 16.까지 합계 798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바. 피고 B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K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합계 12,730,000원이다.

사. 피고 B은 활어운반선을 매도한 후인 2016. 6. 20. 원고가 조달한 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L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아.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8. 16.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5. 원고가 지정한 M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8. 1.경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그리고 피고 B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3,100만 원은 수리비로 지급하여 1,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차.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써 2016. 4. 15.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16. 6. 17.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D과 동업을 하기로 하여 활어운반선을 1억 6천만 원에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7억 6천만 원에 매각하여 매각 차익은 6억 원이고 제반비용으로 2억 4천만 원이 들어갔는바, 총이득금이 3억 6천만 원이므로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할 이득금은 1억 2천만 원임에도 원고는 3,3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산금 8,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은 원고와 사이에 활어운반선 투자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활어운반선에 투자한 돈 및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461,590,00원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없고, 가사 2016. 8. 16.자 정산합의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50만 원만을 지급하면 되며, 예비적으로 N으로부터 양도받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동업한 3인이 약정한 책임이행각서 및 협약서에 피고 C이 수익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책임이행각서 및 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신상의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이나 지분을 넘길 시에는 위 3인이 각자가 지정한 사람이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고, 지분 변경시에는 위 3인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 B의 지정인으로 피고 C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활어운반선 사업에 함께 하지도 않은 피고 C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피고 B, D이 동업을 하여 활어운반선을 매수한 후 이를 수리한 다음 매도하여 수익금을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고, 운반선 매매대금은 7억 6,000만 원이고, 당시에 들어간 제반 비용은 합계 505,090,000원(=선박매수비용 1억 6,000만 원+고물상처리비 2,000만 원+수리비 2억 2,100만 원+등기비용 900만 원+용역대금 3,000만 원+임대료 지급액 438만 원+경비 798만 원+사채이자 12,730,000원+원고가 조달한 자금 4,0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3인의 동업으로 발생한 총 수익금은

254,910,000원(=760,000,000원-505,090,000원)이므로, 원고가 받을 수익금은

84,970,000원(= 254,910,000원×1/3)이다. 이와 다르게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B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은 원고와 2016. 8. 16.자 정산합의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받을 수익금이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2016. 8.경 수익금이 이에 못 미친다고 원고를 속여서 6개월 뒤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 B은 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합계 3,300만 원(=1,000만 원+150만 원+250만 원+1,900만 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은

51,970,000원(=84,970,000원-3,300만 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N으로부터 양도받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660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는 N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7.부터 2017.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17. 9. 29.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피고

B은 2022. 5. 12.경 N으로부터 판결금채권을 양도받고 N은 2022. 6. 28.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채권이 존재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22. 8. 29.자 준비서면 부분이 2022. 8. 30.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B의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상계적상일은 원고에게 판결금채권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는 2022. 6. 28.이다. 위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판결금채권의

원금은 21,500,000원이고, 이에 대한 2010. 3. 17.부터 2017.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상계적상일인 2022. 6. 28.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24,792,739원[=7,413,082원{=21,500,000원×(6년+327/365)×5%}+17,379,657원{=21,500,000원×(5년+142/365)×1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므로 위 합계 46,292,739원(=원금 21,500,000원+지연손해금 24,792,739원)이 자동채권이 된다. 한편 위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채권의 원금이 51,970,00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2022. 6.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1,447,638원{=원금 51,970,000원×(4년+148/365일)×5%}이므로 위 채권의 합계 63,417,638원(=51,970,000원+11,447,638원)이 수동채권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46,292,739원은 상계적상일인 2022. 6. 28.에 소급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정산금채권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1,447,638원 및 원금 중 34,845,101원(=46,292,739원-11,447,638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고, 원고의 정산금채권은 원금 17,124,899원(=51,970,000원-34,845,101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2. 6. 29.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여 정산금 17,124,899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2. 6. 29.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

